

의안번호	제 346 호
의 결 연 월 일	2009년 4월 일 (제279회)

**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**

발 의 자	이영복 의원 외 6인
발의연월일	2009년 4월 일

##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영복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 
번호

346

발의 연월일 : 2009. 4.

발의자 : 이영복 · 권광택 · 심홍섭  
이범윤 · 박영웅 · 민경환  
박종갑(7인)

### 1. 제안이유

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이나 기업인을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, 시행되고 있는 ‘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’의 일부 조문 및 자구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수여되는 상과 인증의 명칭 변경에 따른 현실화(안 제4조, 안 제8조, 안 제10조)
- 나. 협의회 구성 내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(안 제15조)
- 다. 효율적 운용을 위한 조문의 자구수정(안 제16조, 안 제17조)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의안전문 : 붙임
- 나. 신 · 구조문대비표 : 붙임
- 다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- 라. 관련부서 협의 : 경제통상국 기업지원과 협의됨

---

## 충청북도조례 제 호

#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3호 중 “으뜸기업”을 “품질경영우수기업”으로하고,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“이달의 충북우수중소기업인상”을 “충북우수중소기업인상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제1호 중 “제4조 제2호”를 “제4조제1항제2호”로,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의 “주사무소와 공장을 둔 제조업체로서”를 “본사 또는 사업장 등을 둔 기업으로서”로,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의 “제4조 제3호의 ‘으뜸기업’ ”을 “제4조제1항제3호의 ‘품질경영우수기업’ ”으로,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의 “제4조 제5호”를 “제4조제1항제6호”로 각각 한다.

제10조제1호 중 “으뜸기업”을 “품질경영우수기업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4항 중 “부지사”를 “행정부지사”로 하고,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“도 실·본부·국장”을 “도 실·국장”으로 한다.

제16조제2항 중 “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공무원 등으로”를 “1인을 포함한 5인 이내로” 한다.

제17조제1항 중 “건의사”를 “건의사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같은 항의 “옴부즈”를 “옴부즈만”으로 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예우 및 지원대상) ①(생략)            1.-2. (생략)            3. ‘<u>으뜸기업</u>’으로 지정된 우수기업인            4. (생략)            5. 충북지방중소기업청 선정 <u>이달</u>의 <u>충북우수중소기업인상을 수상한 우수기업인</u></p>	<p>제4조(예우 및 지원대상) ①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1.-2. (현행과 같음)  <b>3. ‘<u>품질경영우수기업</u>’</b>.....            .....            4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5. .....  <u>충북우수중소기업인상</u>.....            .....</p>
<p>제8조(선정 및 지정 등) ①(생략)            1. <u>제4조 제2호</u>의 ‘자랑스러운 향토기업인’은 도내에 주사무소와 공장을 둔 제조업체로서 10년 이상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인 중 5명 이내            2. <u>제4조 제3호</u>의 ‘<u>으뜸기업</u>’은 국제표준화기구(ISO)의 규격 인증을 획득한 기업 중 5개 업체 이내            3. <u>제4조 제5호</u>의 우수기업인에 해당한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업인 5명 이내</p>	<p>제8조(선정 및 지정 등) ①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1. <u>제4조제1항제2호</u> .....            ..... <u>본사 또는 사업장 등을 둔 기업으로서</u> ...            .....            .....            2. <u>제4조제 1항 제 3호</u>의 <u>품질경영우수기업</u>’ .....            .....            3. <u>제4조제1항제6호</u> .....            .....            .....</p>
<p>제10조(품질경영 활동지원) (생략)            1. 기업의 품질경영에 관련된 지원사업 및 <u>으뜸기업</u> 지정사업            2.-3.(생략)</p>	<p>제10조(품질경영 활동지원)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1. 기업의 품질경영에 관련된 ...            ..... <u>품질경영우수기업</u> .....            2.-3.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15조(협의회 구성 등) ①-③(생략)          ④위원장은 지역경제 업무를 관          장하는 <u>부지사</u>가 되고 위원은 다         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       는 자 중에서 해당 안건에 따라         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 <p>1. <u>도 실·본부·국장</u>, 도 의회의원          시·군의 부시장·부군수</p> <p>2.-3.(생략)</p>	<p>제15조(협의회 구성 등) ① ③ 현행과 같음          ④.....          ..... <u>행정부지사</u> .....</p> <p>.....          .....          .....          .....          .....          1. <u>도 실·국장</u>, .....</p> <p>.....          .....          2.-3.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6조(기업애로지원센터 설치 운영          ①(생략)          ②센터는 센터장 <u>1인을 포함한 5</u>  <u>인 이내의 공무원</u> 등으로 구성하          며, 센터장은 도지사가 임명 또는          위촉한다.</p> <p>③(생략)</p>	<p>제16조(기업애로지원센터 설치 운영          ①(현행과 같음)          ②..... <u>1인을 포함한</u>  <u>5인 이내로</u> ....., .....</p> <p>.....          .....          ③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7조(기업애로지원 옴부즈만의 운          영) ①센터내에 기업관련 <u>건의사</u>  <u>파악 및 애로사항 해소</u> 등을 위          하여 충청북도 기업애로지원 <u>옴</u>  <u>부즈</u>(이하 “옴부즈만”이라 한          다)을 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②-④(생략)</p>	<p>제17조(기업애로지원 옴부즈만의 운          영) ①..... <u>건의사항</u>          .....          .....          .....  <u>옴부즈만</u>.....          .....          ②-④(현행과 같음)</p>

## 관 계 법령

### □ 중소기업기본법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정부 등의 책무)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.